조선후기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

- 仁敬王后 國恤을 중심으로 -

김 윤 정*

1. 머리말
2. 인경왕후 국휼 절차와 儀註
3. 내상재선 복제 논의의 성격
4. 내상재선 의례의 정비와 변화
5. 맺음말

초록: 내상재선은 왕의 妻喪이자 세자의 父在爲母喪으로서, 왕과 세자의 主喪 문제와 의례의 차등적 구현 등 다양한 변수와 관련되어 있었다. 세자 없는 내상재선인 인경왕후 국휼은 세자의 부재로 인한 의례의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왕의 처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小斂·大斂, 成服·除服, 發引, 練祭·祥祭 등에 왕의 擧哀儀가 마련되었고, 왕이 혼전에 친림하는 奠酌禮가 거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전례에 없던 것으로,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례의 결략이 왕의 의례로 보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경왕후 국휼에서 숙종의 상복은 인열왕후상의 전례에 따라 자최장기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13일째 상복을 벗고 백단령·마포대로 바꾸어 30일째 복을 마치는 역월단상의 방식이었다. 백관의 상복은 자최기년이지만, 왕의 복제에 따라 상복을 바꾸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의 상복 역시 왕의 복제를 기준으로 역월단상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왕의 복제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경왕후 국휼에서 왕의 의례적 역할은 확대되었다. 거애의와 전작례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자의 부재에도 연제와 담제를 거행함으로써 왕의 主喪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왕의 주상은 세자의 부재라는 변수와 상관없이 내상재선의 의례가 온전히 거행될 수 있는 예학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는 왕이 주상으로 명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상재선의 담제 후 혼전의례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었다. 혼전은 흉례의 공간이지만, 내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상재선의 경우 담제 후에도 부묘 전까지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거행하는 길례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혼종성은 곡과 음악의 혼용, 종묘 의례의 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상제 후 곡례를 폐지하고 음악 사용을 정비하였으며, 종묘 의례를 적용하려는 의도에 따라 삭망제 등의 三獻이 單獻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종묘와의 차등이 강조되면서 別廟의 지위에 따른 음악과 음식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핵심어 : 內喪在先, 仁敬王后, 肅宗, 服制, 魂殿

1. 머리말

조선시대 국휼은 왕과 왕비 등의 상장례를 공적으로 거행하여 왕실의 위엄과 신민의 애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국가 의례이다. 조선전기 국휼 의례는 『국조오례의』의 흉례로 정비되었고, 개별 국휼들은 의궤를 통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관련 典籍들이 상당수 소실되었고, 17세기에는 국휼 의례를 재정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18세기에는 조선후기 예학 발전이 대거 반영되면서, 『국조상례보편』을 통한 국휼 의례의 재성문화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국휼 관련 연구들은 상당히 진척되었다.[1] 조선전기에는 실록의 의주를 중심으로, 조선후기에는 의궤나 등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세자와 세자빈 등의 국휼을 통해

1) 조선전기 국휼 연구로는, 양정현, 2014 「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 『역사민속학』 45; 석창진, 2014 「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 『역사민속학』 45; 홍근혜, 2017 「조선 성종대 貞熹王后 國喪 의례와 그 특징」, 『朝鮮時代史學報』 80 등이 있다. 조선후기 연구로는, 이현진, 2012 「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 『규장각』 40; 이현진, 2014 「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과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46; 이현진, 2015 『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김윤정, 2016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등이 있다. 한편, 왕실 상장례의 공간을 건축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신지혜, 2010 「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설행공간의 건축특성」,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와 국상 의례의 구조와 의미에 주목한 연구(이욱, 2017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도 이루어졌다.

신분에 따른 의례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하지만, 사례연구가 중심이 되면서 시기에 따른 의례의 변화과정이 부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왕의 국장을 중심으로 조선전기부터 후기로의 변화를 세밀하게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2] 그 외 의례적 차등을 보이는 왕비·세자 등의 상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만 전체적인 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숙종비 인경왕후(1661-1680)[3]의 국휼을 중심으로 '먼저 난 내상[內喪在先]' 의례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였다. 내상은 보통 왕의 어머니인 대비의 상례인 반면, 내상재선은 왕의 생존시 사망한 왕비의 상례로서 왕의 妻喪이자 세자의 父在爲母喪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왕과 세자의 主喪 문제와 의례의 차등적 구현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한 『국조오례의』는 大喪과 內喪을 중심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내상재선 관련 규정은 조선후기에 대폭 보완되어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서 완성되었다. 따라서 내상재선 의례는 조선후기 예학 발전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측면을 담고 있다.

최근 17세기 선조비 懿仁王后, 인조비 仁烈王后와 18세기 영조비 貞聖王后의 국휼을 통해 조선후기 내상재선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이 이루어졌다.[4] 특히 왕의 상복과 세자의 主喪 문제를 중심으로 상례의 원칙이 내상재선에서 확립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왕의 상복은 조선전기의 경우 白團領·麻布帶를 30일간 착용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선조대 의인왕후 복제 논의를 시작으로 18세기 정성왕후 국휼에서

---

2) 안희재, 2010 「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인경왕후는 沙溪 金長生의 玄孫女로, 1670년(현종 11) 12월 26일 10세의 나이로 세자빈에 간택되었다. 1671년 3월 22일 세자빈 책봉례를 치렀고, 4월 3일 친영을 행했다. 1674년 숙종이 즉위하면서 왕비에 올랐지만, 7년만인 1680년 10월 26일 승하했다. 인경왕후는 20세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후사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인경왕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경왕후의 가문인 광산 김문을 중심으로 국혼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임혜련, 2014 「1671년(顯宗 12) 肅宗妃 仁敬王后의 國婚과 光山 金門家勢」, 『역사와 담론』 71).

4) 김윤정, 2017 「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규장각』 50; 김윤정, 2018(a) 「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 『서울과 역사』 98; 김윤정, 2018(b) 「인조대 인열왕후 국휼의 절차와 의미」, 『장서각』 40.

는 齊衰杖期의 형식으로 완성되었다. 또한 조선전기에는 세자가 내상재선의 주상이었지만, 의인왕후 국휼에서 “모든 상례는 아버지가 주관한다.”는 원칙에 따라 왕이 주상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세자의 행례를 攝行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확립되었다. 국휼 의례는 祖宗典禮를 따른다는 명제하에 매우 보수적이었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대 인경왕후 국휼은 이러한 내상재선 의례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의인왕후와 인열왕후의 국휼 관련 기록이 전란을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었으므로, 인경왕후 국휼에서는 내상재선 의절을 새롭게 정리하고 확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세자 없는 내상재선이라는 점에서 前例를 적용하기 어려운 변수를 갖고 있었다. 인경왕후 국휼을 통해 내상재선의 새로운 규정들이 보완되고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내상재선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먼저 인경왕후 국휼의 절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주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효종비 仁宣王后 국휼에서 정비된 의주들이 참고되었고, 내상재선 시 왕과 대비들을 위한 의주가 새롭게 보충되었다. 다음으로 내상재선 시 왕과 백관, 대비들의 복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내상재선 의례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세자의 부재 속에서 왕의 主喪으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고, 담제 후 혼전의 공간적 위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내상재선 의례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인경왕후 국휼 절차와 儀註

1) 初終에서 發引 전까지의 절차

인경왕후는 1680년 10월 26일 밤 2更, 慶德宮 會祥殿에서 두창으로 승하했다.[5)]

5) 인경왕후의 승하 시각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숙종실록』가 『승정원일기』

혼을 부르는 復의 절차가 이어졌고,[6] 百官들은 淺淡服・烏紗帽・黑角帶 차림으로 궐문 밖에 모여 哭臨하였다. 27일에는 『국조오례의』 戒令條에 따라 殯殿・國葬・山陵 도감을 설치하고, 좌의정 閔鼎重을 국휼을 총괄하는 摠護使로 임명하였다. 이날 오시 정각에 沐浴, 신시 정각에 수의를 입히는 襲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습전 후에는 백관이 白衣・烏紗帽・黑角帶를 착용하고 곡을 하며 왕을 위로하는 擧臨을 행했다. 숙종과 대비인 명성왕후도 이 날 신시 정각에 거애하였다.[7] 당시 창덕궁에 머물던 숙종은 白袍・翼善冠・烏犀帶를 착용하고 自內의 별당에서, 대왕대비인 인조비 장열왕후와 명성왕후도 소복을 입고 본전의 별당에서 거애했고, 관련 의주가 마련되었다.(①)[8]

28일에는 옷과 이불로 시신을 두르고 메우는 소렴을 거행했다. 세자의 부재로 인해, 『국조오례의』의 세자가 入參하여 곡하는 절차는 생략되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곡하고, 女官이 소렴을 직접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9] 왕과 대비들은

는 2경, 『인경왕후국휼등록』은 1경 4점,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는 亥時로 기록되어 있다. 국휼 절차는 『숙종실록』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날짜와 일치할 경우에는 따로 주를 달지 않았다.

6) 인경왕후 국휼 의주는 『仁敬王后國恤謄錄』 권2,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仁敬王后國葬都監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復에서 成服까지의 儀註는 실록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국조오례의』와 동일하지만(『숙종실록』 권11, 숙종 6년 10월 27일) 세자와 세자빈, 대군 등의 부재로 인해 해당 절차가 생략된 형태이다. 예를 들어 易服不食 의주의 경우, 내명부 이하의 行禮만이 수록되어 있다. 의주를 통해 왕실 구성원이 자리를 설치하고 곡하는 爲位哭, 왕비의 입에 쌀과 진주를 물리는 飯含 등의 절차가 『국조오례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인경왕후 국휼에서 마련된 의주들은 〈표 1〉 참조.

7)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0월 27일 "一曹單子, 襲後, 百官以白衣・烏紗帽・黑角帶, 依禮文擧哀. … 一曹單子, 自上以白袍・翼善冠・烏犀帶, 別堂擧哀. … 一曹單子, 王大妃殿以素服, 本殿別堂望哭, 正時申時啓. 一曹單子, 殿下自內別殿擧哀, 正時申時啓.: 거애 장소는 자내 별당(별전), 본전 별당으로 되어 있어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왕과 왕대비의 거처에서 따로 공간을 정하여 거애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빈전과 혼전에 별도의 곡림청이 설치되었다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인경왕후 국휼에서 곡림청의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다(신지혜, 앞의 논문, 107-109면).

8) 〈표 1〉의 해당 의주 참조.

9) 장례 전 內喪 의례는 살아있을 때와 같게 여겨 내외를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습렴뿐만 아니라 빈전에서의 절차도 女官을 통하여 진행되었다(석창진, 앞의 논문, 118-120

소렴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望哭하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승정원은 내상재선의 대렴과 소렴에서 왕이 망곡하는 절차는 "『국조오례의』에 실려 있지 않고 전례도 없지만, 情禮상 때에 맞춰 擧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아뢰었다. 숙종이 이를 허락함으로써, 왕과 대비들의 거애 의주가 새로 마련되었다.[10] 왕은 白袍·翼善冠·烏犀帶 차림으로 別堂에 설치된 거애위에서 곡했고, 천담복을 입은 백관들은 外庭에서 곡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는 옅은 옥색의 淡服을 입고, 별전에 설치된 거애위에서 공주·내명부와 함께 곡했다.(②③)

29일에는 숙종의 성복 날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인경왕후 승하 시 숙종 역시 병중이었으므로, 왕의 충격을 우려하여 바로 부음을 전하지 못했다. 결국 다음날인 27일에 숙종에게 부음이 전해졌고, 부음을 들은 날로부터 6일째인 11월 2일이 성복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경우 26일에 먼저 부음을 들은 신하들과 성복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君臣上下가 일시에 성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조는 인경왕후가 26일 밤에 승하했지만, 復을 하고 거애한 것은 27일 새벽이므로 이 날로 계산하여 모두 11월 2일에 성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신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숙종은 예조와 좌의정 민정중의 견해에 따라 신하들도 왕과 함께 2일에 성복하도록 명했다.[11]

그런데 홍문관에서는 승하한 날이 아닌 거애한 날부터 성복일을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1일에 朔奠을 올려야 하는데, 성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삭전을 지낼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다시 대신들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영의정 김수항 등의 주장에 따라 숙종은 11월 2일에 성복하고, 사망 당

면 참조).

10) 망곡은 멀리서 바라보며 곡한다는 의미이고 거애는 슬픔을 다하여 곡한다는 의미로, 모두 곡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혼용되었다. 그런데 영조는 『국조상례보편』 편찬과정에서 망곡과 거애를 구분하여 "喪이 같은 宮에 있다면 儀註에 '擧哀'라고 일컬어야 하고, 궁이 같지 않다면 '望哭'이라 일컬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영조실록』 권77, 영조 28년 6월 12일).

11) 복의 시간은 명확하지 않아서 4경 혹은 3경 1점 등의 논의가 있었다. 당시 3경 3점 이후는 다음날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3경 1점이면 26일, 4경이면 27일로 간주되었으므로 發喪의 시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숙종실록』 권11, 숙종 6년 11월 1일).

일 부음을 들은 대왕대비와 백관들은 11월 1일에 성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2)]

30일에는 소렴한 시신을 다시 한번 싸고 묶어 梓宮에 들이는 대렴을 행했다. 이어서 경덕궁 隆福殿에 성빈하였는데, 재궁을 攢宮에 안치하고 찬궁 남쪽에 靈座, 동쪽에 靈寢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제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처음에 예조는 인열왕후상의 전례에 따라 사망부터 27일에 公除하여 開座·用刑 등의 국정을 재개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27일은 삼년상을 以日易月한 것으로, 기년인 내상재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기년을 역월하여 사망일로부터 13일째 공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후 공제는 성복일로부터 계산해야한다는 점에서, 왕의 성복일로부터 13일째인 11월 14일로 공제일이 수정되었다.[13)]

11월 1일 종친·문무백관과 내명부 이하가 殯殿에 나아가 성복의를 거행했다. 대왕대비도 이날 별전에서 따로 성복의를 행했다. 숙종과 왕대비는 11월 2일 각각 별당과 별전에서 성복했다.[14)](④) 선조대 의인왕후 국휼에서는 왕의 성복이 별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궁인과 내시만이 알 뿐, 사관이 기록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인조대 인열왕후 국휼에서도 왕의 처소인 大內에서 성복했다는 기록만이 존재한다.[15)] 숙종은 별당에서 성복했지만, 사관이 입시하고 백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례로서 거행되었다. 이후 13일째인 11월 14일에 왕은 자최상복을 벗고 白團領·麻布帶로 갈아입었는데, 의주에 따라 백관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왕대비도 역시 상복을 벗는 의절을 행했다.(⑤)

---

12) 『숙종실록』 권11, 숙종 6년 10월 30일.

13)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0월 30일 "一曹啓曰, 公除日子, 只憑乙亥謄錄, 初日蒼黃之除, 誤以二十七日啓下矣. 三年之喪, 則除服於二十七月, 故用易月之制, 以二十七日公除, 而今此大行王妃之喪, 上下所服, 俱是朞制, 殿下旣從易月之制, 除服於十三日, 則公除之日, 亦當以十三日爲限."; 11월 5일 "一曹啓曰, 凡國恤時公除前, 各司禁刑等事例, 以初喪始計二十七日爲限, 而今此國恤則上下服制, 止於朞年公除之限, 亦以十三日. … 自成服日至十三日除衰, 則當以此爲公除之限, 各司開坐用刑等事始爲擧行, 而大臣之意亦如此, 以此更爲知委何如. 傳曰允."

14)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1월 1일 "一曹單子, 今十一月初二日, 大殿·王大妃殿成服, 正時辰巳間巽時啓."

15)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2일; 『仁烈王后國恤謄錄』, 1635년 12월 14일.

빈전에서는 『국조오례의』에 따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哭奠과 上食, 매월 1일과 15일에 朔奠과 望奠을 거행했다. 『국조오례의』에는 없지만, 매일 낮에 차를 올리는 晝茶禮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다. 종친과 관리들이 향을 올리는 進香 의식도 거행되었다. 12월 18일 사시에 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했고, 2월 14일까지 종친부, 의빈부, 돈녕부, 충훈부 및 각 도의 지방관 등이 차례로 진향했다.[16]

또한 諡號를 정하고, 諡册과 諡寶를 내리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먼저, 11월 2일에 시호는 仁敬, 陵號는 翼陵, 殿號는 永昭로 결정되었다. 1월 15일에는 시책과 시보를 빈전에 내리고[贈諡册寶][17] 명정을 고쳐 쓰는[改銘旌] 절목이 마련되었는데, 인선왕후상의 의주를 참고했다. 2월 14일 진시에 시책과 시보를 국장도감으로부터 내어와 大內에 內入했는데, 도감당상과 낭청은 백의・오사모・흑각대, 집사관은 흑단령・흑각대를 착용하고 彩輿로 시책과 시보를 옮겼다. 16일 묘시에는 영의정 이하가 흑단령을 입고 시책과 시보를 대내에서 內出하여 빈전의 합문 밖 幄次에 보관했다. 巽時(오전9시경)에 영의정이 빈전 문 밖에서 증시책보 의례를 거행했다. 내상이기 때문에 영의정은 빈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女官이 빈전 안으로 시책과 시보를 들였다. 이후 坤時(오후3시경)에는 銘旌을 '仁敬王后梓宮'으로 고쳐 썼다.[18]

한편 재궁에 옻칠을 더하는 加漆이 11월 7일부터 시작되어, 재궁의 銀釘 위에 12번, 재궁 전체에 2번 시행되었다.[19] 앞서 인선왕후 재궁가칠에는 漆布를 은정 위

---

16)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一房所掌」 "晝茶禮及朝夕上食, 自司饗院擧行. … 議政府進香, 十二月十八日巳初二刻巳時, 率百官.… 咸鏡道進香, 同月十四日巳初二刻巳時."

17) 대상과 내상의 경우 아들인 왕이 시책과 시보를 올리는 의식[上諡册寶]이지만, 내상재선이므로 남편인 왕이 시책과 시보를 내려주는 의식이 된다.

18)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월 15일 "一曹啓目, 今此國恤時, 諡册寶自都監內入內(出), 贈諡殯殿, 改銘旌時應行諸事, 參考禮文及甲寅年仁宣王后國恤時例磨鍊開坐爲白去乎. 依此擧行何如. 一大行王妃諡册寶自都(監)內入吉日來二月十四日辰時, 內出同月十六日卯時, 贈諡殯殿同日辰巳間巽時, 改銘旌同日未申間坤時. … 都監堂上郎廳以白衣・烏紗帽・黑角帶, 執事官則黑團領・角帶, 捧諡册寶, 各置於綵輿, 陪詣闕下. … 諡册寶內出時 以黑團領・烏紗帽・黑角帶行禮如儀, 捧諡册寶陪詣殯殿門外權置幄次. 同日坤(巽)時贈諡殯殿時, 仍以黑團領・烏紗帽・黑角帶, 詣殯殿門外. 行禮如儀爲白齊."

에 붙이고 그 위에 다시 칠을 했던 반면, 인경왕후의 재궁에는 칠포를 사용하지 않았다. 칠포가 무익하다는 주장에 따라 칠포를 사용하지 않았던 현종의 재궁가칠 방식을 따른 것이었다. 또한 내상이지만 총호사와 장생전 제조가 가칠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였다.[20] 1월 25일과 2월 6일에 행해진 전체 가칠 시에는 신하들이 고유문을 올리고 모여서 곡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2월 16일에 서사관이 재궁의 윗면에 '上'자를 쓰고, 17일에 재궁을 묶는 結裹 의절이 시행되었다. 이어서 별전을 거행했는데, 인선왕후상의 전례에 따른 것이다.[21]

빈전에서 각종 의례가 거행되는 동시에 산릉에서는 장례를 위한 治葬의 절차들이 진행되었다. 산릉을 정하기 위한 看山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어, 관상감으로 하여금 산릉의 후보지를 살피고 地官을 차출하게 하였다.[22] 여러 차례의 간산을 거쳐 11월 15일 德宗의 敬陵 경내로 산릉이 결정되었다. 11월 17일 壙中의 위치를 재어서 封標하고, 좌향을 丑坐未向으로 정했다.[23] 11월 18일 치장 절차를 택일했는

---

19)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都監儀軌」 "辛酉二月初十日. … 梓宮銀釘上着漆十二度, 梓宮加漆亦至二度."; 「殯殿一房所掌」 "庚申十一月初六日. 殯殿次知中使分付內, 明日梓宮加漆事, 定奪於都監提調前敎是置."

20)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3일; 재궁가칠은 漆工이 출입하고 총호사가 감독한다는 점에서 내상의 내외구분 원칙에는 어긋나는 의절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열왕후 국휼에서 재궁가칠이 처음으로 시작될 때도 지적되었지만, 내외의 구분보다 재궁의 상태가 우선시 되었다(김윤정, 2018(b) 앞의 논문, 160-161면).

21)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殯殿一房所掌」 "辛酉二月十二日. … 一禮曹儀註內, 今正月二十五日, 梓宮加漆吉日時, 令日官推擇, 則同日巳時爲吉. … 一禮曹儀註內, 今二月初六日巳時, 梓宮加漆時, 摠護使・殯殿都監提調・長生殿都提調及提調, 率漆工, 俱詣閤門外, 俯伏哭, 百官就廣達門外, 俯伏哭, 加漆訖, 以次退出事, 啓下. 一禮曹儀註內, 曹單子, 今二月初六日, 梓宮加漆時告由祝文, 令藝文館撰出. … 一禮曹儀註內, 曹單子, 今二月十六日, 梓宮上字書寫告由祝文, 令藝文館撰出, 同日因朝奠預告事. 今二月十七日, 梓宮結裹之意, 因朝奠告由. 結裹後, 依甲寅年例, 當設別陪祭."

22)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0월 29일 "一曹單子, … 奉審定山次, 以山陵可當置簿, 令觀象監急速考出擧行, 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艮如敎. … 一曹啓曰, 觀象監牒報于本曹曰, 今此國恤成服後, 當有山陵看審之擧, 地官中術業精明者多在外方. … 一體撥馬對委, 何如. 傳曰允."

23)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1월 17일 "一看山伏啓內, 臣等當日來詣敬陵內新陵卜得處, 與看山諸人及諸地官等, 更加審察反覆商確, 以坐未向裁定正穴後, 依例封標."

데, 11월 22일 묘시에 공역을 시작하여 12월 9일 새벽에는 敬陵에 고하고 후토신에게 제사지낸 후, 묘시에 풀을 베고 흙을 파도록[斬草破土] 하였다. 1월 1일 묘시에는 봉분을 조성할 때까지 내부를 가리는 구조물인 甕家(陵上閣)를 짓고, 1월 7일 오시에는 현궁을 조성하기 위해 金井機를 놓고 땅파기[開金井]를 시작하는데 깊이[穴深]는 9척으로 하였다. 1월 11일 묘시에 외재궁을 배진하고, 穿壙의 공역을 마친 뒤 외재궁을 내려 장례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24)]

〈표 1〉 인열왕후 국휼 시 의주*

	습렴의례	빈전의례	발인의례	혼전의례
『국조오례의』 공통 의주	復/易服不食/沐浴/襲/襲奠/爲位哭/擧臨/含/靈座/銘旌/小斂儀/小斂奠/治椑/大斂/大斂奠	成殯/成殯奠/成服儀/朝夕哭奠及上食儀/議政府率百官進香儀/贈謚册寶儀	發靷儀/路祭儀/遷奠儀	魂殿虞祭儀/魂殿俗節正朝冬至寒食端午仲秋及朔望祭儀/卒哭祭儀/永昭殿四時及臘攝事儀/永昭殿練祭儀/永昭殿祥祭儀
인경왕후국휼시 새로 마련된 의주	①殿下擧哀儀/大王大妃殿擧哀儀(王大妃同) ②小斂時殿下擧哀儀/小斂時大王大妃殿擧哀儀(王大妃同) ③大斂時殿下擧哀儀/大斂時大王大妃殿擧哀儀(王大妃同)	④殿下成服擧哀儀/大王大妃殿成服儀/王大妃殿成服擧哀儀 ⑤王大妃殿除服時擧哀儀/殿下除服時擧哀儀	⑥發靷時殿下擧哀儀/發靷時王大妃殿擧哀儀/發靷時大妃殿擧哀儀	⑦親臨永昭殿奠酌禮時出還官儀/親臨永昭殿奠酌禮儀/親臨永昭殿時王大妃殿出還宮儀 ⑧親臨永昭殿時出還宮儀/親臨永昭殿奠酌禮儀/殿下親臨永昭殿奠酌時大王大妃殿望哭儀/殿下親臨永昭殿奠酌時王大妃殿望哭儀 ⑨永昭殿祥祭時殿下望哭儀/永昭殿祥祭時大王大妃殿望哭儀/永昭殿祥祭時王大妃殿望哭儀
『국조속오례의』 공통 의주		梓宮加漆時哭臨儀/梓宮上字書寫時哭臨儀/梓宮結裏時哭臨儀	下玄宮時殿下擧哀儀	
기타		殯殿正朝百官進表裏儀/梓宮結裏後別奠儀**		

* 의주의 구분은 안희재, 앞의 논문, 76-86면에 의거하였다. 글자의 출입이 있는 경우 밑줄로 표시하고, 관련된 의주들은 번호로 묶어 분류했다. **이후 숙종, 인원왕후 국휼 등에서도 거행되었지만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이현진, 앞의 책, 146면).

24)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1월 18일 擇日 참조.

2) 發引부터 祔廟까지의 절차

승하한지 5개월 만인 2월 20일 산릉으로 출발하는 발인이 이루어졌다. 발인을 준비하며 2월 4일, 7일, 15일에 걸쳐 3차례의 習儀가 진행되었다.[25] 발인 하루 전날인 2월 19일에 빈전의 찬궁을 치우고 재궁을 닦는 啓殯(啓攢宮)을 거행하였다. 신시에는 길의 신에게 올리는 祖奠을 거행했다. 20일 축시에 빈전의 문[戶] 밖에서 遣奠을 거행하고 이어서 인시에 발인이 이루어졌다. 路祭와 晝停奠 등을 거행하면서 사시에 산릉에 도착하여 정자각에 성빈하고 성빈전과 주다례를 겸행하였다.[26]

2월 22일 축시에 찬궁을 열고, 묘시에 재궁을 현궁에 내렸다[下玄宮]. 吉帷宮에서 虞主에 '仁敬王后'라고 쓰는 題主를 행하고 전을 올렸다[立主奠]. 같은 날 사시에 반우하여, 오시에 경덕궁의 啓祥堂에 마련된 혼전(영소전)에 우주를 봉안하였다. 능을 완성한 후인 2월 29일에는 安陵奠을 올렸다.

발인과 하현궁 시에 왕과 대비들은 거애의를 행했다.(⑥) 『국조오례의』는 왕이 산릉에 隨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단종 이후 산릉에 거둥하지 않으면서 祗送・望哭・祗迎의 절차들이 새로 마련되었다.[27] 내상재선에서는 세자가 산릉에 행차하여 의례에 참여하면서, 왕의 지송・망곡・지영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인경왕후 국휼에서는 세자가 없었으므로, 발인의례의 미비에 대한 대안으로 왕과 대비들의 거애 절차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경왕후 발인의 거애의는, 왕이 대게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곡하는 조선후기 대상과 내상의 지송 절차와는 달리 궐내의 별전에서 이루어졌다. 내상재선에서 행해진 최초의 발인 시 거애의로서, 세자의 부재로 인한 임기응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후 『국조상례보편』에서는 내상재선 시 왕이 돈화문 밖에서 지송・지영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되었다. 내상재선인 만큼 성문 밖이 아닌 궐문 밖으로 정하여 의례의 차등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28]

---

25)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1년 1월 3일 "一觀象監牒呈內大行王妃發靷初度二月初四日, 二度同月初七日, 三度同月十五日推擇事."

26) 『仁敬王后國恤謄錄』 권3, 1681년 2월 20일 "今日寅時發靷, 巳時到山陵, 成殯奠・晝茶禮兼行."

27) 유영옥, 2014 「조선후기 因山時 국왕의 山陵 隨駕에 대한 고찰」, 『역사와 경계』 91, 156면.

반우한 뒤 혼전인 영소전에서 신령을 안정시키는 우제를 지냈다. 2월 22일 초우제부터 3월 3일 칠우제까지 거행되었고 3월 5일에는 졸곡제를 행했다.[29] 내상재선 시 혼전에서의 제향은 主喪으로 간주되던 세자가 주관했지만 인경왕후 국휼에서는 세자가 없었으므로, 신하들이 攝事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소전에서는 매일 조석상식과 주다례가 진행해졌고, 四時・臘日・俗節・朔望 시의 제사가 거행되었다. 숙종은 5월 14일 인현왕후와의 국혼을 앞두고, 5월 5일 단오에 처음으로 영소전에 친림하여 奠酌禮를 행했다. 친히 술을 올리고 곡하며 슬픔을 표현하였는데, 속절의 제사인 단오제와 구별하여 別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30] 명성왕후와 함께 거둥하면서 出還宮儀와 奠酌禮儀가 의주로 마련되었다.(⑦)

승하 후 11개월이 되는 8월 27일에 練祭를 지냈다. 삼년상의 연제는 1주년이 되는 날에 지내지만, 기년의 경우는 11개월이 되는 달 중에서 길일을 정하여 행했다.[31] 연제의 중요한 2가지 절차는 우주를 練主로 고쳐 쓰고, 상복을 練服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국조오례의』에서 내상재선 시 연제는 세자가 주관하고, 연복으로 바꾸는 절차는 세자와 대군에게만 해당되었다. 인경왕후 국휼에서는 세자가 없었으므로, 연복으로 바꾸어 입는 절차가 의주에서 삭제되었다. 숙종은 연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연제 후에 영소전에 친림하여 전작례를 행하였다. 대왕대비와 왕대비는 숙종의 전작례에 맞춰 처소에서 망곡례를 거행했고 해당 의주가 마련되었다.(⑧)

13개월만인 1681년 10월 26일에 祥祭를 지냈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최복을 갖추고 곡례와 拜禮를 마친 후, 최복을 천담복・오사모・흑각대로 바꾸어 입고 다시 들어가 제사를 마무리했다. 천담복을 입고 그 날을 보낸 후, 다음날 길복으로 갈아

---

28) 『國朝喪禮補編』(1758) 권2, 「發引奉辭儀」 "內喪在先, … 殿下哭訣, 則掖庭署設殿下幄次於敦化門外道東南向."

29) 발인부터 졸곡까지의 일시는 『仁敬王后國恤謄錄』 권3, 1680년 12월 10일 "同月十九日. 朝奠兼行啓欑宮, 同日卯時, …卒哭祭同月初五日剛日行事." 참조.

30)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5월 3일.

31) 『仁敬王后國恤謄錄』 권2, 「永昭殿練祭儀」; 『國朝五禮儀』 권8, 「凶禮・練祭儀」 "若內喪在先, 則十一月而練, 先遠日擇吉行之."

입었다. 이 의절과 관련하여 前例의 차이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종비 장경왕후와 선조비 의인왕후의 祥祭에서는 상복을 벗고 바로 길복을 입었던 반면, 인조비 인열왕후의 상제에서는 천담복으로 갈아입고 다음날에야 길복을 입었다. 상제 일에 길복을 입는 것은 예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따라 인열왕후상의 전례대로 천담복을 입었다.[32]

숙종은 상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전에서 백포・익선관・오서대 차림으로 망곡례를 행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도 각각 따로 별당에 자리를 마련하여, 담복을 입고 내명부・공주와 함께 망곡했다. 역시 왕과 대비들의 망곡례 의주가 마련되었다.(⑨) 親子와 같은 상복을 입는 수릉관・시릉관은 상제에서 상복을 천담복으로 갈아입고, 再朞까지 천담복을 착용했다. 혼전에 입직하는 宗室과 내시, 참봉 이하도 재기까지 천담복을 입는데, 외부에 나갈 때의 복색은 백관과 같았다.

15개월이 되는 12월 중 택일하여, 18일에 禫祭를 거행했다.[33] '禫'은 '담담하게 평안'하다는 의미로서, 담제는 상례를 마무리하는 의례이다. 하지만 담제 이후에도 再期인 1682년 10월 26일은 중요한 기점으로 인식되었다. 수릉관과 시릉관이 천담복을 입고 곡하며 제사를 지냈고, 조석상식을 끝냈다. 혼전의 조석상식도 끝나면서, 의식을 거행하던 종실의 입번도 중단되었다. 이후 영소전에는 참봉2인, 守僕4인이 배속되었고, 익릉 역시 일반적인 능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었다.[34]

내상재선이므로 숙종과 함께 종묘에 부묘될 때까지 혼전인 영소전은 유지되었고, 사시제 등의 제향이 혼전에서 거행되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승하하고 혼전인 敬寧殿이 마련되었는데, 숙종의 移御 과정에서 영소전과 경녕전의 전각이 교체되

32)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9월 27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0월 26일.

33) 『仁敬王后國恤謄錄』 권3, 1681년 11월 8일 "一曹單子, 仁敬王后禫祭吉日, 令日官推擇則來十二月十八日爲吉云.": 담제 의주는 남아있지 않다.

34) 『仁敬王后國恤謄錄』 권3, 1682년 9월 9일 "一曹單子, 仁敬王后再朞後, 永昭殿及翼陵, 應行諸事磨鍊開坐爲白去乎, 依此擧行何如. 一再朞祭時, 守侍陵官以下, 服淺淡服, 入就紅門內, 先後哭四拜而出爲白齊. 一再朞祭後永昭殿翼陵朝夕上食竝停罷. … 一永昭殿再朞祭後, 旣止朝夕上食, 則別無宗室入番之事. 再期祭日, 爲始入番宗室以下竝減下爲白乎矣, 參奉二員, 守僕四人仍存察任爲白齊. … 翼陵祭物品式乙良依各陵例擧行爲白齊."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영소전은 창경궁의 문정전, 명정전으로 옮겨지기도 했다.[35] 1722년(경종 2) 8월 11일 숙종의 삼년상을 치른 후 숙종과 인경왕후, 인현왕후의 신주가 함께 종묘에 부묘되었다.[36]

〈표 2〉 인경왕후 국휼의 주요 절차

날 짜	의 례			
1680년 10월 26일	승하(會祥殿, 1경4점・2경)	復(3경1점・4경)	百官哭臨	
10월 27일	沐浴(오시)	襲(신시)/奠	擧哀 (왕・대비 신시)	擧臨
10월 28일	小斂(丙時)/奠	告社廟		
10월 30일	大斂(未時)/奠	成殯(빈전:隆福殿)/奠		
11월 1일	成服(백관・대왕대비 등 신시)/奠			
11월 2일	成服(왕・대비 등 손시)		諡號(仁敬), 陵號(翼陵), 殿號(永昭)	
11월 3일	告訃使 파견			
11월 7일	加漆 시작 (은정에 12회 진행)			
11월 8일	除服(대왕대비 진시)			
11월 14일	除服(왕・대비 진시)			
11월 26일	服盡(왕・대비)			
治葬 (翼陵, 丑坐未向)	始役(11.22 묘시)/ 祠后土(12.9 새벽)/ 斬草破土(12.9 묘시)/ 作甕家(1.1 묘시)/ 開金井(1.7 오시)/ 外梓宮陪進(1.11 사시)			
進香 (12.18~1681.2.14)	의정부(12.18)/ 종친부(12.26)/ 의빈부(12.28)/ 돈녕부(1.22)/ 충훈부(1.30) 개성부(1.6)/ 강화부(1.10)/ 경기도(1.13)/ 공청도(1.20)/ 황해도(1.23)/ 강원도(1.25)/ 전라도(1.29)/ 경상도(2.2)/ 평안도(2.7)/ 종친부별진향(2.9) /함경도(2.14)-이상 모두 巳時에 행함.			
1월 25일	가칠(재궁전체)			
2월 6일	가칠(재궁전체)			
2월 12일	贈諡册寶 습의			
2월 14일	諡册寶內入(진시)			
2월 15일	請諡宗廟儀/ 永寧殿告文			
2월 16일	諡册寶內出(묘시)	贈諡册寶(巽時)	改銘旌(坤時)	梓宮書上字(사시)
2월 17일	梓宮結裹			
2월 19일	啓殯(啓攢宮 묘시)	祖奠(신시)		

35)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12월 17일; 영소전의 이동은 신지혜, 앞의 논문, 145면 참조.
36) 『경종실록』 권9, 경종 2년 8월 11일.

2월 20일	遣奠(축시)	發引(인시)	路祭	丁字閣成殯奠(사시)
2월 22일	山陵啓攢宮(축시)	下玄宮(묘시)	立虞主(길유궁 묘시)	
	返虞(사시) 慶德宮 啓祥堂 봉안(오시)			初虞祭(삼경)
2월 23일	再虞祭(柔日)			
2월 25일	三虞祭(柔日)			
2월 27일	四虞祭(柔日)			
2월 29일	五虞祭(柔日)			
3월 2일	六虞祭(柔日)			
3월 3일	七虞祭(剛日)			
3월 5일	卒哭祭(剛日)			
5월 5일	단오, 親臨奠酌禮			
8월 27일	練祭(11개월)	親臨奠酌禮	王大妃・大王大妃望哭禮	
1681년 10월 26일	祥祭(13개월)			
12월 18일	禫祭(15개월)			
1682년 10월 26일	再期(25개월)			
1722년 8월 11일	祔廟			

3. 내상재선의 복제 논의와 성격

1) 왕과 백관의 복제

인경왕후 국휼에서 왕의 복제는 인열왕후상의 전례에 따라 齊衰杖期로 정해졌다. 먼저 예조는『국조오례의』에 왕의 상복 규정이 없고, 의인왕후와 인열왕후 국휼 시 왕의 복제는 각각 자최기년과 자최장기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신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영의정 김수항과 좌의정 민정중은『儀禮』「喪服」을 근거로 자신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남편은 처를 위해 자최장기복을 입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예기』와『가례』에는 "처상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喪杖을 갖추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지만, 어머니는 상례를 주관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인 명성왕후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자최장기를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37]

그런데 인열왕후상의 자최장기는 以日易月하여, 성복 후 만 12일간만 지팡이를

갖춘 자최상복을 입는 방식이었다. 12일 동안도 喪事를 행할 때만 자최상복을 입었고, 평상시에는[常御] 黑頭冕·白衣·白帶·白皮靴, 신하들을 만날 때는 翼善冠·白袍·烏犀帶·白皮靴를 착용하였다. 13일째 왕은 상복을 벗는[除服] 의식을 거행했고, 상복은 정결한 곳에 묻어 폐기하였다. 이후 흑두면·白木綿團領·生麻布帶·白皮靴를 착용하다가 사망 후 30일째 벗는 것으로 복을 마쳤다[服盡]. 다음날부터 吉服을 입는데, 졸곡 때까지 喪事에만 익선관·백포·오서대·백피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38]

이러한 내상재선 시 왕의 복제는 역월단상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민정중은 자최장기복의 원칙에 따라 11개월 연제, 13개월 상제, 15개월 담제에 맞추어 상복을 바꾸고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왕은 공무를 위해 임시로 상복을 벗는 公除를 행하지만, 상사에는 계속 상복을 입는 방식으로 喪期를 지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인열왕후상의 전례를 근거로 한다는 명분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9] 역월단상에 대한 비판은 의인왕후 국휼에서부터 계속 제기되었는데, 영조대 정성왕후 국휼에서야 비로소 자최장기의 원칙에 따른 복제가 시행되었다.[40]

인경왕후를 위한 숙종의 복제는 기본적으로 인열왕후상의 전례와 동일하지만, 왕의 常御服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조는 인열왕후 국휼 시 『등록』과 『국조오례의』에 관련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당시의 『승정원일기』를 참고하였다. 자최복을 입는 12일간의 상어복은 白頭冕·素衣·素帶, 30일 복을 마친 후 졸곡 전까지의

---

37)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0월 28일 "一曹啓曰, 今此大行王妃之喪, 殿下服制, 五禮儀中全不擧論, 取考乙亥謄錄, 則其時亦無可據之禮文, 只依庚子謄錄, 初以齊衰期磨鍊, 成服之後, 更因傳敎, 議大臣追行杖制矣. … 領議政金壽恒·左議政閔鼎重以爲, 禮云爲妻父母在不杖, 家禮附註亦云父母在則爲妻不杖, 而儀禮註說, 又有適子父沒, 爲妻杖朞之文. 兩說似不無逕庭, 而然亦各有其意, … 若父沒母存, 則母不得主喪, 故其子可以杖也."

38) 『인조실록』 권31, 인조 13년 12월 13일.

39)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2일.

40) 김윤정, 2018(a) 앞의 논문, 60면; 또한 자최장기는 15개월 담제까지이므로, 정확히 역월하면 15일간 자최상복을 입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13일간만 자최상복을 입었다. 영조대 정성왕후 국휼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함께 개정되었다.

상어복은 흑두면・소의・소대를 착용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였고, 숙종의 허락을 받았다.[41] 그런데 현존하는 『인열왕후국휼등록』와 『인조실록』에 의하면, 12일간의 상어복으로는 백두면이 아닌 흑두면을 착용했고 30일 후 복을 마친 후에는 따로 상어복을 정하지 않았다. 당시 예조에서 참고했던 『승정원일기』는 영조대 소실되었으므로 현존하는 개수 『승정원일기』에서는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예조가 인용했던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록』・『등록』과의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단, 인열왕후 국휼에서 참고한 선조대 의인왕후상의 복제는 처음에 왕의 12일간 상어복을 백두면으로, 30일 후 졸곡 전까지의 상어복을 흑두면・백의・백대로 정했다가 후에 개정한 바 있다.[42] 인열왕후 국휼에서도 이와 관련된 혼란이 있었으므로, 숙종대 예관들이 이러한 전말을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개정 전의 복색을 그대로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흑두면과 백두면의 문제는 왕과 세자・백관 상복간의 輕重을 다루는 중요한 논쟁이었음에도,[43] 숙종대 아무런 검토 없이 백두면을 착용하게 된 것은 의문이다. 상례에는 흰색을 사용한다는 원칙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렇게 인경왕후 국휼에서 결정된 왕의 상어복은

41)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0월 30일 "一曹啓曰, 服制節目中, 自上除衰服後, 御黑頭冕・白木綿圓領・生麻布帶・白皮靴, 滿三十日除服事, 依乙亥謄錄磨鍊啓下, 而十三日前常御服色及三十日生布帶除後卒哭前常御服色, 乙亥本曹謄錄中, 無載錄之處, 而五禮儀, 則此等節目元不擧論, 他無徵據之文. 取考乙亥政院日記, 則十三日前常御, 則白頭冕・素衣・素帶, 卒哭前常御, 則黑頭冕・素衣・素帶, 依庚子年例磨鍊啓下矣. 今亦優此別單書入之意敢啓. 傳曰知道."

42) 『선조실록』 권127, 선조 33년 7월 1일; 의인왕후 국휼 시 왕의 상복은 복잡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왜란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前例를 검토하지 못한 채 (1)선조는 자최기년복을 입었다. 이후 (2)내상재선에서 왕은 『가례』의 휴가주는 규정에 따라 백단령・생포대를 30일 만에 벗는다는 전례를 확인하면서 (3)새로운 절충안이 마련되었다. 자최상복은 성복 기준 12일 만에 公除하여 벗고, 이후 백단령・생포대를 착용하다 사망 기준 30일 만에 상기를 마치는 방식이었다(김윤정, 2017 앞의 논문, 76-81면). 백두면과 졸곡 전 상어복은 (1)단계에서 마련된 것으로, 역월단상으로 결정되면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43) 김윤정, 2018(b), 앞의 논문, 167-168면.

이후 인현왕후, 효장세자 국휼로 계승되어 새로운 전례로 자리잡게 되었다.[44]

왕의 복제에 따른 백관들의 복색도 논의되었다. 10월 28일 마련된 복제절목에서 종친·백관의 복제는『국조오례의』내상재선 규정에 따라 자최기년으로 결정되었다. 백관은 내상과 내상재선에 모두 자최기년복을 입지만, 내상재선에는 왕의 30일 服盡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국조오례의』의 경우 왕의 복진 전 종친·백관은 백의·오사모·흑각대를 착용하는데, 예조는 인열왕후상의 전례에 따라 최복을 입는 것으로 수정했다.[45] 그러나 인열왕후 국휼에서 백관이 최복을 입는 기한은 왕의 30일 복진이 아닌, 13일(만 12일) 제복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예조는 왕이 복진 전 백단령·마포대를 착용하는 상황에서, 백관들이 오사모·흑각대 차림으로 궐내를 출입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열왕후상의 전례와 다르더라도 왕의 복진까지 백관들이 계속 최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신들에게 수의할 것을 청했다.

김수항과 鄭知和는 "13일에 제복했으나, 전하께서 현재 백단령·마포대를 하고 계시는데 백관들이 오사모·흑각대를 하고 궐내를 출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안한 일"이므로 백관이 최복을 입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고례의 "임금에게 조회하는 때라도 絰을 벗지 않는다."를 근거로 최복을 그대로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李尙眞 역시 私家의 父在爲母喪에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상복을 입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백관이 최복을 입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숙종은 인열왕후상의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왕이 자최상복을

---

44)『영조실록』권20, 영조 4년 11월 20일 "禮曹啓曰, 今番服制節目, 議大臣定奪磨鍊矣, 更考辛巳謄錄, 則殿下服制條, 十三日衰服未除前, 常御白頭冕·素衣帶·白皮靴, 十三日除衰服後, 改御黑頭冕·白木綿團領·生麻布帶·白皮靴, 三十日而除卒哭前, 常御黑頭冕·素衣·素帶·白皮靴事載錄矣."

45)『仁敬王后國恤謄錄』권1, 1680년 10월 28일 "一宗親及文武百官, 齊衰朞年, 圓領衣【用次等麤生布】·布裏帽【用次等麤生布裏紗帽去鐵角以布作帶前繫後垂】·麻帶·白皮靴, 卒哭後, 白衣·烏紗帽【笠則用白】·黑角帶, 凡于表喪事着衰服.【殿下服盡前, 闕內及進見衰服. 服盡後近臣闕內淺淡服, 進見吉服, 出外衰服, 卒哭後進見吉服, 出外白衣.】; 당시 백관의 상복은 공복인 圓領衣를 거친생포로 만든 것으로, 온전한 자최상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숙종 국휼 시 상복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이러한 차이는 계속되었다.

입는 13일까지는 백관도 최복을 입지만, 왕의 13일 제복부터 30일 복진 전까지 백관들은 오사모·백의·흑각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付標하여 수정했다. 30일 복진 이후에는 近臣뿐 아니라 백관들도 궐내에서는 천담복, 진현시에는 길복, 바깥 출입 때는 최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46]

한편, 부수찬 宋光淵은 백관의 졸곡 후 복제를 백의·백대로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조오례의』에는 백의·오사모·흑각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조대 仁順王后 국휼에서 이미 백관·백대로 개정하였고 효종비 인선왕후 국휼에서도 그대로 따랐음을 강조했다. "임금의 어머니와 임금의 부인의 복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내상재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하의 복을 13일 만에 벗는다면 그 이하의 복제에 있어서는 번거롭게 논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백관 상복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47]

〈표 3〉 왕과 백관의 복제 비교

<table>
<tr><td rowspan="2"></td><td colspan="6">1680</td><td colspan="4">1681</td><td>1682</td></tr>
<tr><td>10.26
初終</td><td colspan="2">11.1/2
成服</td><td>11.14
除服(왕)</td><td>11.26
服盡(왕)</td><td>3.5
卒哭</td><td>8.27
練祭</td><td>10.26
祥祭</td><td>12.18
禫祭</td><td>10.26
再期</td></tr>
<tr><td rowspan="3">왕</td><td rowspan="3">白袍·
翼善冠·
烏犀帶
(거애)</td><td>喪
事</td><td>자최장기복</td><td rowspan="3">黑頭冕·白
木綿團領·
生麻布帶</td><td>익선관·백포
·오서대</td><td colspan="2">망곡·전작례
등에 착용</td><td colspan="3">길복</td></tr>
<tr><td>常
御</td><td>白頭冕·素
衣·素帶</td><td>흑두면·
소의·소대</td><td colspan="5" rowspan="2">길복</td></tr>
<tr><td>見
臣</td><td>翼善冠·白
袍·烏犀帶</td><td>길복</td></tr>
<tr><td rowspan="2">종친·
백관</td><td rowspan="2">白衣·烏紗帽·
黑角帶 (거애)</td><td colspan="2" rowspan="2">자최복
(원령의·
포과모·마
대)</td><td colspan="3">자최복(喪事)</td><td colspan="4" rowspan="2">길복</td></tr>
<tr><td>백의·오사
모·흑각대
(闕內·進見)</td><td>천담복(궐내)
길복(진현)
자최(出外)</td><td colspan="2">길복(진현)
백의·오사모·
흑각대 (출외)</td></tr>
<tr><td>수릉·
시릉관*</td><td colspan="2">상동</td><td colspan="4">자최장기복</td><td>練服</td><td colspan="2">천담복</td><td>길복</td></tr>
</table>

* 수릉관과 시릉관은 親子와 동일하게 내상재선에 자최장기복을 입었다. 연제 때 연복으로 바꾸고 상제 때 연복을 벗은 후 천담복을 입다가 25개월인 재기에 길복을 입었다.

46)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15일; 16일.

47)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3일.

2) 대왕대비와 왕대비의 복제

인경왕후 국휼 시 대왕대비 장열왕후와 왕대비 명성왕후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이들의 복제가 논의되었다. 먼저 인조비 장열왕후의 상복은 無服, 小功, 緦麻로 견해가 나뉘었다. 장열왕후에게 인경왕후는 曾孫婦에 해당되는데, 『家禮』에 따르면 마땅히 후사가 될 曾孫의 처에게 小功服을 입지만 그 시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복을 입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예조는 情禮상 복제가 없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신들에게 의논할 것을 청했다.

민정중은 『가례』의 "嫡孫으로 아버지가 죽어서 조모 및 증·고조모를 위해 承重한 자"는 자최삼년복을 입으며, 그 부인은 從服으로 같이 상복을 입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제는 서로 보답하는 의리가 있으므로, 증조모 역시 승중한 증손부를 위하여 상복이 없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문관 교리 林泳은 무복임을 주장했다. 『儀禮喪服圖式』 등에 증손부를 위한 服이 없다는 점과 『通典』의 "玄孫이 후사가 되었으나 만약 그 어머니가 아직 살아 있으면 현손의 부인은 傳重할 수가 없으니, 傳重의 服은 의리상 마땅히 시어머니에게 있어야 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인경왕후의 시어머니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장열왕후는 증손부인 인경왕후에게 상복을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48]

知事 金德遠은 소공복을 주장했다. 『의례상복도식』 등에 증손부를 위한 服이 없는 것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 고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 3년복을 입는 만큼, 시부모도 傳重한 증손부를 위해 고례와 달리 소공복을 입어야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례』에서 시어머니의 생존 여부를 따진 것은, 적손이나 증·현손으로 아직 후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 것임을 강조했다. 숙종은 인조의 적증손으로 이미 왕통을 계승했으므로 인경왕후를 위한 장열왕후의 상복은 소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9]

---

48)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0월 28일.

49)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0월 30일; 김덕원은 『가례』 小功 조항의 "爲嫡孫若曾玄孫之當爲後者之妻, 其姑在則否之."에서 '당위후'는 '마땅히 후사가 될'이라는 의미로 아직은 후사가 되지 못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정중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가장 간소한 시마복을 주장했다. 먼저 김덕원의 주장처럼 고례와 지금의 복제 차이를 인정하고, 둘째, 왕비는 至尊과 짝하여 종묘를 받들었으므로 사서인의 경우와 다르며, 셋째, 왕비가 생전에 대왕대비를 극진히 봉양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적어도 한솥밥을 먹고 살던 사람을 위한 상복인 시마복은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수항은 시어머니가 있으면 복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장열왕후가 인경왕후에게 상복을 입는 것은 인열왕후를 융숭히 받들기 위해 예경에 없는 복제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자·고부 간의 귀천은 大倫과 관계되는 것으로 제왕과 사서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종은 宗統과 報服을 강조하며 민정중의 견해에 따랐고, 장열왕후의 상복은 시마로 결정되었다.[50]

다음으로, 복제에 역월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명성왕후의 상복은 별다른 논의없이 적부를 위한 자최기년으로 결정되었다. 이미 갑인예송을 통해 장열왕후는 효종비 인선왕후에게 자최기년복을 입었으므로, 적부복은 자최기년으로 명확히 인식되었다. 명성왕후의 상복 역시 최복인 生布로 만든 大袖와 長裙을 입고, 卒哭後에 白布로 만든 대수와 장군으로 바꾸어 기년을 마치는 방식이었다. 김수항 등은 적부복은 자최기년이지만, 왕이 역월단상한다는 점에서 왕대비가 기년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적부복이지만, 왕의 모상인지 처상인지에 따라 복제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 역시 "두 분 慈殿께서 손아래 사람의 상에 최복을 그대로 입고 계신 것은 미안하다."는 점을 들어 역월하여 상복을 벗도록 했다. 왕대비는 왕과 동일하게, 13일에 제복하고 30일에 복진했다. 대왕대비의 경우 시마복을 역월하면 3일에 불과한데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편의상 한나라의 纖冠·黃裳의 차림으로 7일을 지내는 뜻에 의거하여 7일 만에 상복을 벗도록 하였다.[51] 이에 11월 8일 곤시에 별당에서 곡하고 시마복을 길복으로 갈아입는 절차가 마련되었다.[52]

---

50)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1일.

51) 『숙종실록』 권10, 숙종 6년 11월 4일; 단, 해당 기록에는 왕이 "상복을 바꾸고 벗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왕대비의 구체적인 복색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내상재선 시 대비들의 복제는 성종비 공혜왕후 국휼에서 결정된 바 있었다. 당시 성종의 복제는 『가례』의 '상장례시 휴가 주는 규정'에 따라 백단령·마포대를 30일간 착용하는 것이었다. 대비들 역시 상복이 아닌 白衣裳·백피화를 착용했고, 대왕대비는 15일 왕대비는 30일 만에 벗었다.[53] 『가례』의 휴가 규정에서 소공은 15일, 기년은 30일이므로, 대왕대비의 적손부복은 소공, 왕대비의 적부복은 기년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례와 달리 인경왕후 국휼에서 대비들의 복제는 선조대 의인왕후상 이후 왕의 복제에 적용된 역월단상 방식을 따랐다. 내상재선의 복제에서는 왕의 복제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내상재선 의례의 정비와 변화

1) 왕의 의례적 역할의 확대

인경왕후 국휼 의례는 세자의 부재로 인해 신하들이 攝事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情理'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남편인 숙종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었다. 먼저 거애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상재선의 소렴·대렴과 연제·상제 등에 왕이 거애하는 의식은 인경왕후 국휼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국조오례의』의 소렴과 대렴에는 세자가 入參하여 곡할 뿐, 왕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연제·상제도 세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왕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숙종의 거애의는 비록 세자의 行禮 방식과는 다르지만, 내상재선에서 왕의 의례적 역할이 강화되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영조대 정성왕후 국휼에서는 왕이 내상재선의 소렴과 대렴에 입참하고, 연제·상제 등을 주관하는 조문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국조상례보편』에도 수록되었다.[54]

---

52) 『仁敬王后國恤謄錄』 권1, 1680년 11월 8일 "一曹單子, 大王大妃殿今十一月初八日未申間坤時, 時御所別堂哭臨後, 除緦服進吉服何如, 啓依所啓施行爲良敎如."

53) 『성종실록』 권41, 성종 5년 4월 16일.

54) 김윤정, 2018(a), 앞의 논문, 65-66면.

둘째, 奠酌禮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숙종은 단오와 연제일에 영소전에 친림하여 單獻으로 술을 올리고 곡하는 전작례를 시행했는데, 역시 情理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영소전의 전작례는 국왕의 어진을 모신 南別殿의 작헌례를 기준으로 절목을 마련하여, 혼전의 제향과 성격을 달리 하였다.[55] 이후 영소전뿐만 아니라 인현왕후의 혼전인 경녕전에도 전작례가 거행되면서 새로운 의례로 자리 잡았다.[56]

그런데 정성왕후 국휼에서 영조는 숙종의 전작례를 근거로 내상재선 의례의 친행을 주장했다.[57] 영조는 세자의 행례를 모두 섭행으로 간주하고 왕의 친행을 원칙으로 내상재선 의례를 정비했다. 숙종의 전작례는 主喪의 친행이라는 의미보다는, 정리에 따른 '別奠'으로 국휼 절차와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의 친행 의례가 새로 마련된 것은 왕을 내상재선의 主喪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인경왕후의 연제와 담제 논의는 왕의 복제 및 주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국조오례의』에는 내상재선의 경우 세자가 연제・상제・담제까지를 지내며 상복을 바꾸고 벗도록 규정되었다. 왕은 이미 역월하여 13일 만에 상복을 벗었고, 종친・백관은 연제에 상복을 바꾸지 않고 상제에 상복을 벗을 뿐이었다. 따라서 세자가 없는 내상재선에서, 세자가 주관하는 연제와 담제의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숙종은 이 문제를 유신들에게 收議하고 홍문관에서 전례를 상고하도록 명했다.[58]

---

55)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7월 23일; 작헌례는 단헌으로 의식을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하룻밤을 재계하고 새벽에 행하는 일반적인 제향과 달리 오전에 행하고 당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과 장비, 경비 등을 줄일 수 있었다(이욱, 2015 『조선왕실의 제향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92-296면).

56) 『숙종실록』 권26, 숙종 20년 4월 19일; 『숙종실록』 권38, 숙종 29년 9월 13일; 영조대 이후 내상재선의 혼전뿐 아니라, 세자와 세손 등의 廟에도 전작례가 자주 거행되었다(『영조실록』 권101, 영조 39년 1월 15일; 『영조실록』 권112, 영조 45년 2월 15일).

57)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9월 7일 "傳曰, 昔年永昭殿・敬寧殿, 俱有親行酌獻禮之事. 以此推之, 杖朞・祥・禫祭, 其宜親行, 令該曹謄錄中, 詳考親行與否, 有則載之, 無則問于大臣, 講定儀註, 令編輯廳載錄."

58)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23일.

홍문관은『儀禮』「喪服」의 “처를 위한 복은, 복 입는 기간 및 지팡이를 짚는 것, 담제를 지내는 것 모두가 어머니 복과 같다.”와『禮記』「雜記」의 “기년상에는 11월 만에 연제, 13월 만에 상제, 15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등을 근거로 처상에도 연제・상제・담제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예기』「服問」의 “임금이 주상이 되는 상은 夫人인 처와 太子와 適婦이다.”를 근거로, 왕이 왕비상의 주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상재선에는 연제・담제를 행해야 하고 왕이 주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왕이 權制를 써서 상복을 벗었지만, 원래 자최장기복을 입었으므로 당연히 연제・담제가 있어야하고,『예기』「상복소기」의 “제사는 복을 벗기 위해 올리는 것은 아니다.”를 근거로 연제와 상복을 벗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제를 계기로 우주를 연주로 고쳐 써야 하며, 수릉관・시릉관은 연복으로 바꾸어 입어야하기 때문에 연제를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59]

송시열 역시 연제와 담제를 지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영중추부사 송시열은 의논드리기를, “당초에 대신이 11개월 만에 연제, 13개월 만에 상제,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는 예를 행하도록 주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으면 오늘날의 일은 의심할 것이 없을 터인데, 그대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朱子가 變禮를 논하면서 말한 ‘근본 강령이 바르지 않아 모든 일이 함께 구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제・상제・담제의 의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상복을 바꾸고 벗는 것[變除]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오늘날의 연제는 진실로 시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죽은 사람에게 제사지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폐지하거나 빠뜨리는 것은 진실로 서운합니다. … ”라고 하였다.[60]

그는 숙종이 역월단상하여 자최장기의 원칙에 따라 상복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연제는 상복을 변제하는 것만이 아닌 제사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숙종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연제와 담제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내상재선 시 왕의 상복은 자

59)『숙종실록』권11, 숙종 7년 6월 26일.

60)『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7월 5일.

최장기이고, 세자가 없어도 왕이 주상이 되어 자최장기의 원칙에 맞게 연제와 담제를 거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자가 없다는 변수는 기존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세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왕비의 국휼 절차는 온전히 진행되어야 했고, 내상재선의 의례적 완성을 위해 왕의 주상으로서의 역할은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세기 영조비 정성왕후 국휼에서는 왕이 주상으로 명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담제 후 혼전의례의 정비

내상재선의 경우, 왕비의 신주는 왕과 함께 종묘에 부묘될 때까지 혼전에 그대로 모셔졌다. 15개월 담제 후에도 혼전이 유지되면서, 사시제와 삭망제 등의 제향이 혼전에서 거행되었다. 내상재선의 혼전은 흉례의 공간이자 길례의 공간으로서의 혼종성을 갖고 있었고, 혼전의 위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담제 이후 혼전에서의 곡과 음악의 혼용 문제가 논의되었다. 상례에서 곡의 변화는 슬픔을 줄이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초상에는 代哭으로 통곡하는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다가 殯所를 차리면 대곡을 중지하고 朝夕哭과 슬픈 생각이 들 때 하는 哀至哭을 하였다. 卒哭이 되면 애지곡은 중지하고 조석곡만 하다가, 小祥이 되면 조석곡도 중지하였다. 이후에는 朝夕上食과 四時·朔望 등의 제향에만 곡을 하다가 大祥과 禫祭를 마치고 부묘함으로써, 상례가 마무리되고 곡도 끝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상재선에서는 15개월 담제 이후에도 혼전이 유지되었고, 再期까지 혼전과 산릉에서 朝夕上食을 계속 거행했다. 조석상식의 의례 자체에 곡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재기까지는 조석상식을 통해 곡이 계속되었다.[61] 그런데 『국

61) 『국조오례의』의 혼전의례에는 연제 이후 곡을 중단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인조 국휼에서 담제까지 삭망제에 곡을 하기 시작했고 인선왕후 국휼에서는 연제 이후 재기인 상제까지 조석상식의 곡을 허용하였다(『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10일; 29일). 내상재선의 경

조오례의』에는 내상재선의 담제 후에 음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조석상식에 곡을 하면서 한편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길흉이 섞인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김수항 등은 대상 후에도 그대로 혼전과 산릉에서 上食을 행하는 것은 古禮와 국제에 근거가 없는 '예에 없는 예[無於禮之禮]'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조오례의』에서 음악 사용을 규정한 만큼, 곡을 계속하면 길흉이 섞이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집의 李翔은 사가의 예를 인용하여 "부재위모상의 경우는 小祥 뒤에 바로 궤연을 철거하니, 저절로 곡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곡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2]

반면, 송시열은 혼전과 산릉을 구분하여 산릉에서는 조석상식에 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릉의 제사는 고례와는 상관없는 것이므로, 예의 원칙을 논할 필요 없이 주자의 편지를 근거로 후한 예를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숙종은 "후한 것을 따른다."는 송시열의 견해를 받아들여 산릉에서의 조석상식에는 곡을 허용하였다. 산릉과 달리 혼전에서는 상제 후 재기까지 상식은 거행하지만 곡하는 절차는 없애도록 하였다.[63]

혼전에서 곡례 절차가 폐지되면서,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따른 음악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담제 이후의 음악은 『악학궤범』을 상고하여 성종비 공혜왕후의 혼전인 昭敬殿의 예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였다. 소경전은 종묘와 달리 별묘인 文昭殿의 제도를 따라 俗樂을 사용하였다. 소경전의 악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이 악장을 지었는데, 奠幣와 進饌의 절차에 사용하는 악장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악기의 제작을 위해 樂器鑄成廳을 따로 설치하고, 당상과 낭청을 임명하였다.[64] 그런데 이후 영소전의 진선시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

우, 15개월 담제 후에도 세자의 心喪이 재기까지 이어졌고 수릉관·시릉관 제도에 따라 3년 상식이 이루어졌다.

62)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0월 22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0월 24일.

63)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0월 26일.

64)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6일;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10일.

으로 변경되었다. 혼전과 別廟에 進膳하는 일은 종묘에 진선하는 절차와 비교하여 차등을 두어야 하고, 『국조오례의』에 진선시 음악을 쓴다는 문구가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65]

그러나 산릉에서 곡하는 것 역시 혼전에서의 음악 사용과 길흉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66] 김수항, 민정중 등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음악을 쓰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로서 당연히 따라야 하고, 산릉의 곡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숙종도 이에 따라 산릉에서의 곡례와 혼전에서의 음악 사용을 구분하여 모두 인정하였다.[67]

둘째, 담제 이후 사시·삭망 등의 제향 규정이 정비되었다. 예조는 인열왕후상의 전례를 따르고자 했으나 참고할 만한 기록이 없었고, 『실록』에서도 전거를 찾지 못했다. 이에 『국조오례의』의 사시·납일 및 속절·삭망에 攝事하는 의식에서, "내상재선의 경우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 뒤의 제사에는 祭服을 입고 음악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담제 뒤 제사를 길례로 간주하여 종묘제사의 의식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이에 종묘의 삭망제와 같이 영소전의 삭망제와 조석상식 등이 삼헌에서 單獻으로 변경되었다.[68] 이러한 규정은 『국조상례보편』에도 반영되었다.[69]

숙종 11년에는 영소전의 의례를 온전히 종묘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래 영소전은 별묘로 간주되어 평소 음식인 常膳과 속악을 사용해 왔는데, 예조는 종묘의 예를 따라 犧牲과 軒架·佾舞의 음악을 사용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얻었다. 그러나 남구만은 "종묘의 樂歌는 盛德을 아름답게 형용하여, 成

65)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2월 24일.

66)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18일.

67) 이 논의는 영조대 정성왕후 국휼에서 다시 진행되었다. 이 때는 영조의 주장에 따라 혼전에서 아예 음악을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국조상례보편』에 수록되었다(김윤정, 2018(a), 앞의 논문, 74-76면).

68) 『숙종실록』 권12, 숙종 7년 11월 1일.

69) 『國朝喪禮補編』 권2, 「魂殿朝夕哭及上食」 "每日… 終獻亦如上儀. 【內喪在先祥後, 只一盞. 受敎】": 단, 영조는 친행할 때는 三獻을 하는 것으로 섭행과 구분하였다(김윤정, 2018(a), 앞의 논문, 69-70면).

功을 신명에게 고하는 것이니 后妃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과 "종묘에 모셔진 선대왕들을 위한 악장도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소전의 악장을 먼저 만드는 것은 미안하다."는 점을 주장했다.[70] 송시열도 남구만과 같이 후비에게 종묘의 악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金壽興은 영소전을 別廟로 인식하면서 종묘와 동일한 희생과 악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71] 결국 별묘의 상선과 속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혼전은 흉례의 공간이지만, 내상재선의 경우 담제 후에도 부묘 전까지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거행하는 길례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혼종성은 곡과 음악의 혼용, 종묘 의례의 적용 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상제 후 곡례를 폐지하고 음악 사용을 정비하였으며, 종묘 의례를 적용하려는 의도에 따라 삭망제 등의 삼헌이 단헌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종묘와의 차등이 강조되면서 별묘의 지위에 따른 음악과 음식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72]

5. 맺음말

이상으로 숙종비 인경왕후 국휼을 중심으로 內喪在先 의례의 변화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내상재선은 왕의 妻喪이자 세자의 父在爲母喪으로서, 왕과 세자의 主喪

---

70)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 2월 3일;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 6월 3일.

71) 『宋子大全』 권26, 「永昭殿用樂議」; 『退憂堂集』 권8, 「永昭殿祭樂變通議」

72) 석창진은 세종대 내상재선인 소헌왕후 국상의례를 통해, 혼전의례가 흉례에서 길례로 전이되는 과정이었음을 지적했다. 혼전의식의 차등적 질서를 강조하여, 담제 이후의 혼전의식은 종묘제사 절차와 가까운 길례였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소헌왕후 국상의례만의 특징으로 『국조오례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석창진, 앞의 논문, 112-117면). 그러나 이것은 소헌왕후 국상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내상재선의 공통된 성격이고, 『국조오례의』에서도 내상재선의 경우 담제 이후 음악 사용과 음복례 등을 인정하고 있다((『國朝五禮儀』 권7, 「凶禮・魂殿四時及臘親享儀」 "若內喪在先, 而王世子行祭 … 其禫後祭, 用樂有飮福."). 또한 이후 의인왕후, 인경왕후 등의 내상재선 의례에서 담제 이후 혼전의례는 길례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와 의례의 차등적 구현 등 다양한 변수와 관련되어 있었다. 세자 없는 내상재선인 인경왕후 국휼은 세자의 부재로 인한 의례의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왕의 처상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경왕후 국휼 과정에서는 왕의 의례에 관한 의주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국조오례의』와 의인왕후, 인열왕후 국휼에서는 세자의 의례가 중심이 되었으므로,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례의 결략이 왕의 의례로 보충되었다. 이에 前例에는 없지만 정리의 차원에서 소렴·대렴, 성복·제복, 발인, 연제·상제 등에 왕의 거애의가 마련되었고, 왕이 혼전에 친림하는 전작례가 거행되었던 것이다.

내상재선 시 왕의 의례는 상복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인경왕후 국휼에서 숙종의 상복은 인열왕후상의 전례에 따라 자최장기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13일째 상복을 벗고 백단령·마포대로 바꾸어 30일째 복을 마치는 역월단상의 방식이었다. 백관의 상복은 자최기년이지만, 왕의 복제에 따라 상복을 바꾸는 절차가 추가되었다. 대왕대비와 왕대비의 상복 역시 왕의 복제를 기준으로 역월단상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역월단상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전례를 따른다는 명분이 강조되었고, 왕이 13일째 상복을 벗는 것은 내상재선에서 왕의 역할을 제한하는 전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인경왕후 국휼에서 왕의 의례적 역할은 확대되었다. 거애의와 전작례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자의 부재에도 연제와 담제를 거행함으로써 왕의 主喪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왕은 세자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내상재선의 주상이 되어야하고, 자최장기의 원칙에 맞게 연제와 담제를 거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세자의 부재라는 변수에도 내상재선의 의례가 온전히 거행될 수 있는 예학적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8세기 『국조상례보편』에는 왕이 주상으로 명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상재선의 담제 후 혼전의례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었다. 혼전은 흉례의 공간이지만, 내상재선의 경우 담제 후에도 부묘 전까지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거행하는 길례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혼종성에 따라 곡과 음악의 혼용, 종묘 의례의 적용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祥祭 이후 혼전의 상식에서 곡례를 폐지

하였고, 혼전의 음악 사용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담제 후 길례의 성격을 강조하여 종묘 의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삭망제 등의 삼헌이 단헌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종묘와의 차등이 강조되면서 별묘의 지위에 따른 음악과 음식의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논문투고일(2018. 11. 12),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3)

참고문헌

1. 자료

『成宗實錄』『宣祖實錄』『仁祖實錄』『肅宗實錄』『景宗實錄』『英祖實錄』『承政院日記』
『國朝五禮儀』『國朝續五禮儀』『國朝喪禮補編』
『仁敬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奎 13554) 『仁敬王后國葬都監都廳儀軌』(奎 13553) 『仁敬王后國恤謄錄』(K2-2989) 『仁烈王后國恤謄錄』(K2-2999)
『宋子大全』『退憂堂集』

2. 논저

김윤정, 2016「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한국학연구』40.
_____, 2017「宣祖代 懿仁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규장각』50.
_____, 2018(a)「英祖代 貞聖王后 國恤의 성격과 의미」,『서울과 역사』98.
_____, 2018(b)「仁祖代 仁烈王后 國恤의 절차와 의미」,『장서각』40.
석창진, 2014「조선 世宗妃 昭憲王后 國喪儀禮와 그 의미」,『역사민속학』45.
신지혜, 2010「조선 숙종대 왕실 喪葬禮 설행공간의 건축특성」,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희재, 2010「朝鮮時代 國喪儀禮 硏究 : 國王國葬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정현, 2014「조선 초기 원경왕후 喪葬禮 의식과 그 특징」,『역사민속학』45.
유영옥, 2014「조선후기 因山時 국왕의 山陵 隨駕에 대한 고찰」,『역사와 경계』91.
이 욱, 2015『조선왕실의 제향공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_____, 2017『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이현진, 2012「정조대 文孝世子의 喪葬 의례와 그 특징」,『규장각』40.
_____, 2014「영조대 懿昭世孫의 禮葬과 그 성격」,『한국사상사학』46.
_____, 2015『왕의 죽음, 정조의 국장』, 글항아리.
임혜련, 2014「1671년(顯宗 12) 肅宗妃 仁敬王后의 國婚과 光山 金門 家勢」,『역사와 담론』71.
홍근혜, 2017「조선 성종대 貞熹王后 國喪 의례와 그 특징」,『朝鮮時代史學報』80.

Abstract

The Change and Meaning about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in the Late Choson Dynasty

– focused on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In-Kyung –

Kim, Yun-jung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was the funeral of king's wife and crown prince's mother, so related to the variables about funeral's host and ritual difference.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In-Kyung showed the characteristic of emphasizing the meaning of the funeral of king's wife in order to solve the lack of ritual due to absence of crown prince. New rituals, Geoaeui and Jeonjaglye of the king were prepared to express sadness.

The King Suk-Jong wore 1year mourning for his wife, but he removed it for official affairs after 12days and finished it in 30days, according to the national funeral of Queen In-Yeoul. Mourning of Queen Jang-yeol and Queen Myung-sung follwed the short-term mourning of the king.

The King Suk-Jong pererformed yeonje and damje that were considered as rituals of crown prince, so the king's role of funeral's host was emphasized. It became a ritual basis to complete ceremonies regardless of the absence of crown prince. The ceremonies in Spirit hall after damje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mixing music and crying, the procedure of crying was abolished in Spirit hall after sangje. Although some applied the jongmyo ritual, Spirit hall after damje was considered the byulmyo.

Key words : Queen's funeral earlier than king's, Queen In-Kyung, King Suk-Jong, Rules of mourning, Spirit hall.